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- 먼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개정이유는
 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,
 -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
 - 용어의 정의중 “금전과 물품”을 “자금”으로 변경하며
 -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여 “보조금등”으로 표현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외한 자금만을 교부하는 “보조금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-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본 조례안의 개정은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